

## 외국의 언론관유 판례

본 연구자료는 외국의 언론관계판례들을 모아 번역한 것으로 언론법제 연구와 한국언론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편집자 주

## 미국판례

허위의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정적 고통의 고의적 침해를 가했으므로 신문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Peoples Bank & Trust Co. v. Globe International

19 Med. L. Rptr.2097 (서부아칸소연방지방법원, 1992)

## 사건개요

원고는 Peoples Bank & Trust 은행으로 노령의 Mollie Mitchell 의 재산보호인인데, 1991. 9.24. 이 사건의 문제된 Sun 지의 발행회사인 Globe International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사생활침해와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다. Mitchell 부인은 Arkansas Mountain Home 에 거주하는 96 세의 할머니인데 1963 년부터 시내광장에서 신문가두판매대를 운영하였다. 그 전에는 신문을 배달하였고 현재에도 일정한 시내 상업구역 및 단골고객에 대하여 신문을 배달하고 있다. 그녀는 별로 크지 아니한 Ozart Mountain 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시의 「상징적 인물」 또는 「보물」로 불리어졌다. 「신문배달소녀」로서 그녀는 여태껏 과부로서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하여 왔다. 그녀가 운영하고 있는 신문가두판매대는 시내광장의 두개의 상업용 건물 사이의 막다른 골목길에 지붕을 달도록 허락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이 가두판매대는 그녀의 생활의 필수품을 공급하는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 되어 왔다. 원고 청구의 기초는 Sun 지의 1990. 10. 2. 자에 나타난 기사와 사진이다. 위 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속보, 세계에서 가장 노령인 101 세의 신문배달원이 임신으로 신문배달을 그만 두게 되다. 신문배달은 나를 젊게 만들어요』. 한편 Mitchell 을 묘사함이 분명한 일반 신문기사의 형식과 양식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한번쯤은 그녀가 팔 아래 신문뭉치를 끼고서 도로를 힘차게 걸어가고 있음을 보았을 정도여서 그녀는 시의 상징이 되었다」는 기사와 함께 팔 아래 신문뭉치를 끼고 도로를 힘차게 걷고 있는 그녀의 사진이 그 기사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위 사진은 피고회사의 또 다른 발간물인 Examiner 지의 1980 년에 Mitchell 에 관한 사실적으로 정확한 기사에서 사용된 것이다. 이 사건은 1991. 12. 2. 부터 같은 달 4.까지의 사이에 Arkansas, Harrison 에서 배심에 회부되었다. 배심원은 피고의 행위가 Mitchell 을 잘못 표현되게 하여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의 고의적 가해를 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배심원은 원고에게 650,000 달러의 배상적 손해와 850,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를 선고하였다. 배심원은 명예훼손적 청구에 대하여는 피고승소의 평결을 하였다. 판결은 배심평결에 따라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법원에 계류된 것은 피고가 법률상 당연판결신청 또는

예비적으로 재심리 신청에 대해서이다. 판결의 집행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62 조에 의하여 피고의 신청에 대해 결정시까지 정지되었다.

### 판결요지(요약)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객관적 증거 즉 의사의 수진, 휴무, 통상적 일상생활의 변경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세계에서 가장 고령의 101 세의 신문배달원이 임신을 이유로 그만두다』 라는 제하의 기사와 함께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신문에 의한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의 가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배심원의 평결을 파기할 수 없다.
2. 판사의 배심원에 대한 설시에 있어 원고가 명예훼손소송과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소송은 잘못된 표현이 매우 침해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현실적 악의로서 행위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특정한 것은 Arkansas 주법에 충분히 부합되며, 이러한 두 소송은 병합되어 제기될 수 있다.
3. 완전히 허구적인 기사와 사실적인 것으로 의도된 기사와 구별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이 행해지지 아니한 피고의 게재방법은 배심원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독자가 기사를 현실적 사실로서 해석하게 한다든지 최소한 기사가 그렇게 해석됨을 경솔하게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게 한다.
4. 배심원의 850,000 달러의 징벌적 손해액 및 650,000 달러의 배상적 손해액의 평결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 판결이유

Waters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1. 법률상 당연판결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50 조에 대한 1990 년의 개정으로 종전에 평결무시판결신청(motions for judgment notwithstanding the verdict)이었던 것이 지금은 법률상 당연한 판결의 신청(motions for judgment as a matter of law)이 되었다. 그러나 비록 법률상 용어는 다르다고 하나 기준은 동일하다. 제 8 연방항소법원의 Jeanes v. Milner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는데, 그 판결에서 평결무시판결신청은 당사자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 2 연방항소법원은 Simblest v. Maynard 사건에서 문언 그대로 자주 적용되고 자주 반복되는 기준으로 「간략히 말하여 증거가 증인의 신빙성을 측정하지 않고서 또는 증거의 비중을 고려하지 아니하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단지 하나의 결론일 수 있는 것인지에 있다」 고 판시 하고 있다. 피고는 감정적 고통의 고의적 침해와 사생활침해라는 두 가지의 주장에 대하여 모두 법률상 당연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신적 폭행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극단적이고 난폭한 행위 또는 극단적인 정서적 고통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다투고 있다. 비록 피고가 변론에서 Mitchell 에 대한 신문게재는 합리적인 독자에 의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단지 허구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코 명예훼손되어질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그 독자들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게재된 기사의 일부 내용은 사실적이고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으로, 독자들이 허구와 사실의 차이를 알 수 없음이 분명 하다. 피고측 일부 증인들은 어느 기사내용이 순전한 허구(fantasy)이고 어느 것이 진실로서 일정한 사실상의 근거를 가진 것인지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고 있다. Mitchell 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에 관하여, 그녀는 자신이 그 기사에 의해 분노하고 감정이 상하였으며, 당황하고 모욕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아가 그녀는 임신 여부에 대하여 조롱을 당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는 「극단적 정신적 고통」을 어떤 개인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는 객관적 증거의 존재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Mitchell 이 병원을 가지는 않았고 일을 못한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그녀의 통상의 일상적인 행동을 변경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동일한 주장에 대한 Arkansas 주 최고법원은 Growth Properties I v. Cannon 사건에서 정신적 폭행의 불법행위에 대한 평결에 관한 상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상소인의 원심파기주장의 첫 두 가지 점은 현실적 손해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배상적 및 징벌적 손해의 지급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상소인은 피상소인의 어느 누구도 기분이 좋지 않았든지 마음이 아팠든지 하는 다소 막연한 언급 이외는 어떠한 손실 또는 침해에 대하여 증언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정신적 폭행이라는 불법행위의 본질은 피고에 의한 난폭한 취급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안녕에 대한 침해라는 사실에 있다. 만약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에 이를 정도로 무도하다면 법이 배상하도록 하는 침해는 고통 그 자체이지 이에 부대한 보다 현재적인 손실 또는 침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 그 자체가 현실적 손해이며 정확한 금전적 산정에 따른 실제적 비용부담이라는 면에서의 특별한 손해의 증명은 배상적 손해액 지급의 판결에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피고로서는 본질적으로 Mitchell 이 충분히 명백 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합리적인 배심원은 증거를 조사하고 문제된 Sun 지를 열람한 후 그녀의 경험은 처리되지 아니한 오물더미 속을 서서히 끌려가고 있는 사람의 그것과 유사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경험한 시련과 발생한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잔존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남지 아니하였으나, 어느 누구도 상당한 손해가 끌고 다닌 사람에 의해 야기되었음을 의심하지 아니한다. 당원은 합리적인 배심원이 상대적으로 성인의 육체를 어린애의 그것으로 묘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에 의해 진흙탕에 묻혀버린 것과 같은 유사성을 발견하기 에 충분하다고 본다. 피고는 의심할 바없이 신문의 이야기, 문학, 허구 등을 게재할 헌법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야기할 때에는 우리의 법제도는 문자 그대로 침해 당한 사람에게 대하여 원상회복조치가 충분하게 행해지도록 요구한다. 적절하게 선출된 배심원은 충분한 증거조사 후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으며, 우리의 법제도는 당원으로 하여금 배심원의 결정을 판결로서 대체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사생활침해의 청구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3 가지의 주요한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 첫째, 피고는 사생활침해 내지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침해의 청구는 명예훼손소송에서 피고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보호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체적 불법행위로서 사용될 수 없으며 사용되어서도 아니된다고 주장한다. Arkansas 주 최고법원은 특정적으로 사생활의 잘못된 표현을 원인으로 한 명예훼손과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청구는 동일소송에서 제기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Dodrill v, Arkansas Democrat

Co.사건에서 위 최고법원은 「사생활침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권리는 1)원고에 대한 잘못된 표현 이 합리 적 인 사람에 게는 매우 침 해 적이고, 2)피고가 공표될 사항의 허위성과 원고가 잘못된 표현으로 처하게 될 사정을 알았다든지 경솔하게 무시하고 행동하였을 때 인정되며,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을 위한 청구원인은 동일소송에서 병합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공표에 대한 하나의 손해배상만이 가능하다」 고 하면서 「연방최고법원의 Time. inc. v. Hill 판결의 측면에서, 현실적 악의가 사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원고의 입증책임은 증거의 우월의 기준에 의하기보다는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의 기준에 의해서 규율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피고의 두번째 및 세번째의 주장은 모두 이 사건에 적용된 현실적 악의의 기준에 관해서인데 피고는 법원이 배심원에 대하여 현실적 악의의 개념에 대하여는 적절하게 실시 하였으나 Globe 측의 고의적 행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Globe International 또는 그 고용원이 현실적으로 게재된 기사가 Mitchell 에 관한 현실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임을 알았다는 명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거없이, 배심원의 현실적 악의에 대한 인정은 법에 반한다고 하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현실적 악의의 개념의 두 가지 요소 중 하나인 「경솔하게 무시하고서 한 행위」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실적 악의는 고의적 행위 또는 독자들이 게재된 내용이 Mitchell 에 대한 현실적 사실 및 사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경솔하게 예상치 못한 행위라고 정의 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의 증언을 들은 후, 배심원이 피고가 그들의 독자들이 문제된 기사를 Mitchell 에 관한 현실적 사실 또는 사건을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을 의도할 수 있었고, 명백히 의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피고는 그 기사가 그렇게 해석될 것이라고 경솔하게 예상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피고는 나아가, 배심원 청결은 배심원이 명예훼손청구에 유리하게 인정하므로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표현을 인정함으로써 일치되지 아니한 평결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 신문기사가 원고에 관하여 현실적 사실 또는 원고의 현실적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살피건대 명예훼손이나 잘못된 표현이 일정한 사항이 원고에 관한 현실적 사실을 요구하고 있으나, 침해의 기타 요소는 차이가 있다.

잘못된 표현은 1) 공표로 인해 원고가 처하게 될 잘못된 사정이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매우 침해적이고, 2) 현실적 악의라는 두 가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명예훼손청구는 다음과 같은 6 가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 1) 피고가 명예훼손적 기사를 게재할 것.
- 2) 기사가 원고의 또는 원고에 대한 것일 것. 즉 기사가 원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 3) 기사가 원고의 현실적 사실 또는 사건 내지 원고의 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 4) 그 기사가 허위일 것,
- 5)피고에게 그러한 기사를 게재하는 데 과실이 있을 것,
- 6) 그러한 기사의 게재가 원고에 대한 현실적 손해의 근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배심원은 문제된 기사가 매우 침해적이거나 위 개념에 부합하는 명예훼손적임은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진의 사용을 동의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사생활침해청구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잘못된 표현으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는 단순히 사진의 사용에만 근거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기사에 관련된」 사건이 자신을 잘못 비취지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당원은 이러한 문제를 배심에 회부하는 것을 정당화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고 이를 인정한다.

## 2. 평결된 배상액의 감경신청

「배심원 평결의 범위를 심사함에 있어서 연방법원의 정당한 역할은 연방법의 문제이다. 다만 법원은 평결의 과도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정지 주의 법에 따른다. 연방법원은 평결이 법원의 양심을 흔들 정도로 과도하게 초과한 경우에만 배상액 감액을 허용한다.」 (American Business Interiors, Inc. v. Haworth, Inc.) 배심원 평결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 50 조 제 6 항 및 제 59 조의 「법원은 제 50 조상 평결에 관여함이 인정된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이 근거할 수 있는 상당한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제 59 조상, 평결이 증거의 명백한 비중에 만하고 허위 또는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한 결과를 가져오는 증거에 기초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Mattison v. Dallas Carrier Corp.) 피고는 배상적 손해에 있어 650,000 달러의 선고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원은 위 선고가 Boone 카운터 역사상 최고의 고액이며 Arkansas 주 역사상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사건에서 역시 최고의 배상적 손해액평결인 사실을 알고 있다.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선고는 법원의 양식에 반하고 단순히 감정적이고 편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고통에 대하여는 이것의 배상이 매우 주관적 요소이고 양적으로 판단하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배심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당원은 만약 선고된 배상액의 어떤 부분이 감액될 것인지를 결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단지 배심원의 판단을 판사의 판단으로 대체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피고는 또한 징벌적 손해액에 있어서는 850,000 달러의 선고는 감정과 편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징벌적 손해액의 적절성을 심사함에 있어 배심원은 피고가 현실적 악의의 존재가 요구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징벌적 손해액의 배상적 손해액의 비율이 과도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당원이 사실인정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가정할 때 보다 감경된 배상액을 선고하였으리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으로 배심의 판단을 대체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당원은 이러한 평결이 법원의 양식을 흔들 정도로 보지 아니한다.

## 3. 재심리신청

재심리신청에 관하여, 당원은 연방제 8 항소법원의 여러 부가 판결한 사건들에서 제시한 무엇이 「불일치」 또는 「애매성」 인지에 관하여 적용될 기준에 대한 관심과 불확실성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해왔다. 당원은 위 항소법원의 판시를 사실심법원은 배심원 평결이 증거의 「명백한 비중」, 「압도적 비중」 또는 「우세한 비중」에 반한다고 말할 수 없는 한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입각한 것으로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원은 이 사건에 있어서 배심원 평결을 유지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고 이를 인정 한다.

4. 결론 결국 앞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이유없어 기각한다.